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73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3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3
나.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	15
2. 생산비용 세액공제 신설	72
가. 전략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72

I. 개요

1.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73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5.

(3) 회 부 일 : 2025. 9.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 등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관련 재화의 국내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재화의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비

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는 ① 일반 R&D 세액공제와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③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20%,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증가분 방식’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이 적용되는데,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¹⁾은 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생략)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

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20~35%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²⁾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이 10%p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5%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일반) 또는 3년(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신설되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됨. 또한, 중고품, 임대용 자산 및 리스에 의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임.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됨.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이 대기업 1%·중견기업 5%~7.5%·중소기업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6%~9%·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5%·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3년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5년 2월 세법개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5%p 상향된 기본공제율이 적용됨.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당초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법률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바이오의약품,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이 추가되었음³⁾.

3) 바이오의약품: 2023년 12월 세법개정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2025년 3월 세법개정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술 현황]

구분	분야	기술
미래형자동차	자율 주행차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전기 구동차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기술, , 언어이해 기술 등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IoT 네트워크 기술, IoT 플랫폼 기술 등
	클라우드(Cloud)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관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등
	IT 융합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등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등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등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등
차세대소프트웨어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등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등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등
	반도체 등 소재·부품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등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차세대 방송통신	5세대(5G) 및 6세대 (6G)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등
	UHD (Ultra-High Definition)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등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등
	의료기기·헬스케어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등
	바이오 농수산물·식품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등
	바이오 화학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등
에너지·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발전시스템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등
	원자력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등
	오염방지·자원순환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등

구분	분야	기술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초경량 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등
	구리합금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등
	특수강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등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등
	희소금속·소재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고정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등
	안전로봇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등
	의료 및 생활 로봇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소재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등
	첨단 부품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등
	첨단 장비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등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수소	부생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산업공정	합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등
	에너지효율·수송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
방위산업	방산장비	추진체계 기술 등
	전투지원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25. 2. 28. 개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현황4)]

분야	기술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및 전력관리 반도체[BCDMOS(Bipolar-CMOS-DMOS), UHV(Ultra High Voltage), 고전압 아날로그 IC(Integrated Circuit), PMIC(Power Management IC)] 설계·제조기술(0.35 μ m이하)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파운드리용 IP 설계 및 검증 기술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4) 202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되었으나,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2025년 10월 기준).

분야	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백신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Epi)·전사·접합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수소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미래형 이동수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분야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2025. 2. 28. 개정)

□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모두 2024년에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2024년 기업 결손 발생으로 공제액이 이월된 것에 기인함. 다만, 기업 실적 회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이월 등을 고려할 때 2025년에는 다시 조세지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⁵⁾

R&D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3년 4조 6,302억원에서 2024년 2조 9,57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에는 다시 4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910	954	1,057	1,081	1,015	951	990
법인세	26,430	26,342	36,173	45,221	28,560	40,522	42,964
합 계	27,340	27,296	37,231	46,302	29,575	41,473	43,954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3년 2조 799억원에서 2024년 1조 7,693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217	491	810	1,036	1,269	1,477	1,505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64	16,424	24,204	28,571
합 계	6,226	13,459	21,997	20,799	17,693	25,681	30,076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4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0,163개가 1조 3,398억 3,2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584개가 1조 5,161억 3,200만원을 신고했음.

[2024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4,073	16,914	1	0
20억원 이하	5,980	47,225	3	98
50억원 이하	11,292	172,356	8	218
100억원 이하	8,110	220,769	15	424
200억원 이하	5,437	251,052	40	2,444
300억원 이하	2,052	153,812	46	2,526
500억원 이하	1,754	182,008	76	6,914
1,000억원 이하	1,173	199,823	164	24,890
5,000억원 이하	292	95,873	846	264,524
5,000억원 초과	0	0	385	1,214,094
합계	40,163	1,339,832	1,584	1,516,132

자료: 국세통계포털

2024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10,375개가 4,484억 5,4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899개가 1조 1,036억 2,000만원을 신고했음.

[2024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1,223	2,212	4	166
20억원 이하	1,094	4,481	2	27
50억원 이하	1,979	17,187	11	258
100억원 이하	1,717	34,593	34	715
200억원 이하	1,724	64,686	70	2,733
300억원 이하	817	51,818	69	3,603
500억원 이하	908	89,515	126	7,554
1,000억원 이하	708	115,518	241	22,376
5,000억원 이하	205	68,443	899	230,499
5,000억원 초과	0	0	443	835,687
합계	10,375	448,454	1,899	1,103,620

자료: 국세통계포털

나.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

현 행	개정안
□ 기업의 R&D 및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및 제24조) ○ 국가전략기술 범위(제10조)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및 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국가전략기술 범위(제10조) - 방위산업 추가(윤한홍의원안, 허성무의원안) - 양자컴퓨터 추가(정일영의원안, 안철수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로봇 추가(구자근의원안) - 원자력 추가(허성무의원안) -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이언주의원안, 안철수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우주항공 추가(허성무의원안, 박대출의원안) - 해상풍력 추가(이언주의원안) - 철강 추가(강승규의원안) - 인공지능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포함 명확화(황정아의원안) - 클라우드컴퓨팅 추가(김상훈의원안) - 재생에너지 추가(박지혜의원안) - 지속가능항공유 추가(문진석의원안) - 조세특례 대상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규정(서범수의원안)

* 윤한홍의원안 2024. 11. 29. 발의(의안번호 6053), 정일영의원안 2025. 2. 6. 발의(의안번호 7924), 구자근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40), 허성무의원안 2025. 2. 28. 발의(의안번호 8567), 이언주의원안 2025. 5. 9. 발의(의안번호 10433), 강승규의원안 2025. 7. 4. 발의(의안번호 11290), 안철수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1), 황정아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9), 김상훈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18) 박지혜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33), 박대출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29), 문진석의원안 2025. 9. 18. 발의(의안번호 13087), 서범수의원안 2025. 9. 23. 발의(의안번호 13172)

1)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윤한홍의원안, 허성무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위산업은 방위산업물자, 무기체계 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포함)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함.⁶⁾

방위산업은 우리나라의 안보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수출 산업으로서 의의가 있음.

글로벌 방산 시장은 각국의 국방비 지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2022년 글로벌 국방비는 약 2.24조 달러로 2021년 글로벌 국방비 2.18조 달러 대비 3.7% 증가하였음.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의 2022년 국방비가 2021년 대비 58% 상승하였으며, 추후 국방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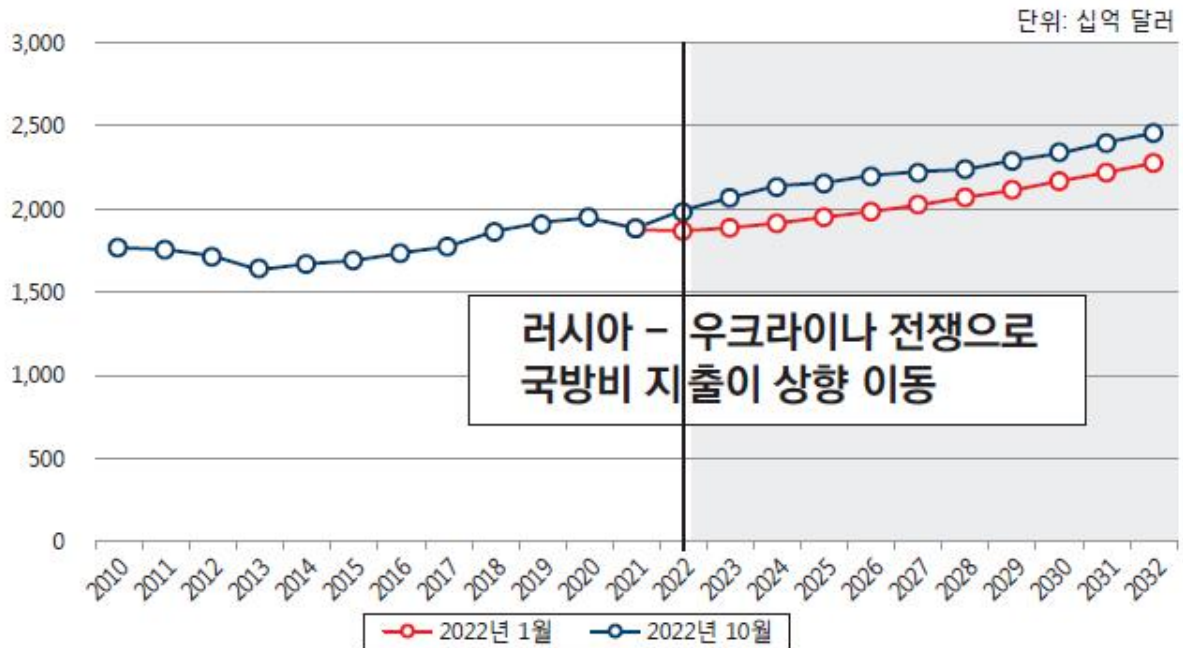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자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글로벌 국방예산 전망(2010년~2032년)]



자료: 산업연구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2023. 3.)

2018~2022년 글로벌 무기수출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약 40%(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4%(9위)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2019년까지 수출액이 30억 달러 미만이었으나,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2023년 수출대상국은 12개국으로 2022년 4개국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고, 수출 무기체계 종류도 2배로 늘었음.⁷⁾

[최근 5년 방산 수출실적]

(단위: 억 달러)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액	25	30	73	173	135

자료: 방위사업청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7) 한국무역보험공사, 「방위산업 현황과 전망」, 2024. 2.

□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방위산업에 대한 R&D와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방산 수출 제고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방위산업은 무기 자체를 수출한 후에도 무기 운용 프로그램 개선, 부품 교체 및 정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무기 수출이 추가적인 수출로 연계되는 특징이 있음. 특히,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무력충돌 등 국제분쟁 격화로 긴장감이 고조됨에 향후 방산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2022년에는 방위산업에서 13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⁸⁾

둘째,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전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늘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할 필요성이 크므로 방산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방위산업을 강화하여 수출을 늘리면 방산수출을 통한 잠금효과⁹⁾를 통해 국가간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여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

8) 국회예산정책처, 「나보 포커스: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과제」, 2024.7 .

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방위산업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2024년 2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추가되어 이전보다 R&D와 투자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비교적 최근에 세제지원이 강화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강화된 세제지원이 R&D 및 설비투자 촉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함.

둘째, 개정안과 같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자원 하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우선적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154

9) 잠금효과(lock-in effect)는 A국이 B국의 무기체계 도입 후에는 A·B 간 안보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후 무기체계의 호환성 및 군사협력 강화로 발전되는 현상임.

2) 국가전략기술에 양자컴퓨터 추가(정일영의원안, 안철수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양자컴퓨터를 추가하려는 것임.
- 양자소재란 열적 요동이 최소화되어 물질 고유의 미시세계를 기술하는 슈뢰딩거 방정식의 법칙을 잘 따르며 물질 파동 함수로 잘 기술되는 신소재를 말하고, 양자컴퓨터는 이론상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고속 연산 및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난제 해결형 알고리즘을 제공함.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 의료, 국방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됨.

[주요 산업별 양자컴퓨터 활용분야]

구 분	단 기	중장기
금융	- 위험 분석 및 관리	- 포트폴리오 최적화 - 고객 타겟팅 및 예측
의료·제약	- 신약 설계 - 단백질 구조 분석 - 암 진단 및 치료	- 맞춤 의료 서비스 - 방사선 치료 - 보험료 산정 및 위험 분석
소재	- 신소재 개발 - 자동차 배터리 및 운송수단 용 연료 소재 개발	- 양자 엔진
국방·안보·우주	- 암호체계 개발	- 방어 시나리오 생성
교통·물류·항공	- 교통 관리 - 비행 게이트 할당 - 물류자원 최적화	- 항공 운항 시스템 최적화 - 항공 화물 적재 최적화
제조·반도체	- 배터리 소재 최적화	- 제조 공정 최적화
사이버보안	- 암호기술 개발	- 차세대 암호체계 개발
기타	- 기상예측	- 지하자원 탐색 - 양자로봇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 글로벌 양자컴퓨터 시장은 2024년 8조 9,155억원에서 연평균 20.1%씩 확대되어 2031년 23조 1,202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2024년 789억원이었던 우리나라 양자컴퓨터 시장규모는 2031년 약 3,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¹⁰⁾.

양자기술이 미래 산업의 판도를 결정할 중추적인 기술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앞다투어 기술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음.

미국은 2018년 양자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을 제정하여 관계부처를 포괄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였으며, 2021년에는 양자컴퓨터를 10대 첨단기술에 추가하고 2022년에는 백악관 산하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위원회를 설치하였음.

중국 역시 양자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였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양자기술 분야에 약 19조원을 투자하였으며, 2035년까지 매년 양자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7% 이상 증액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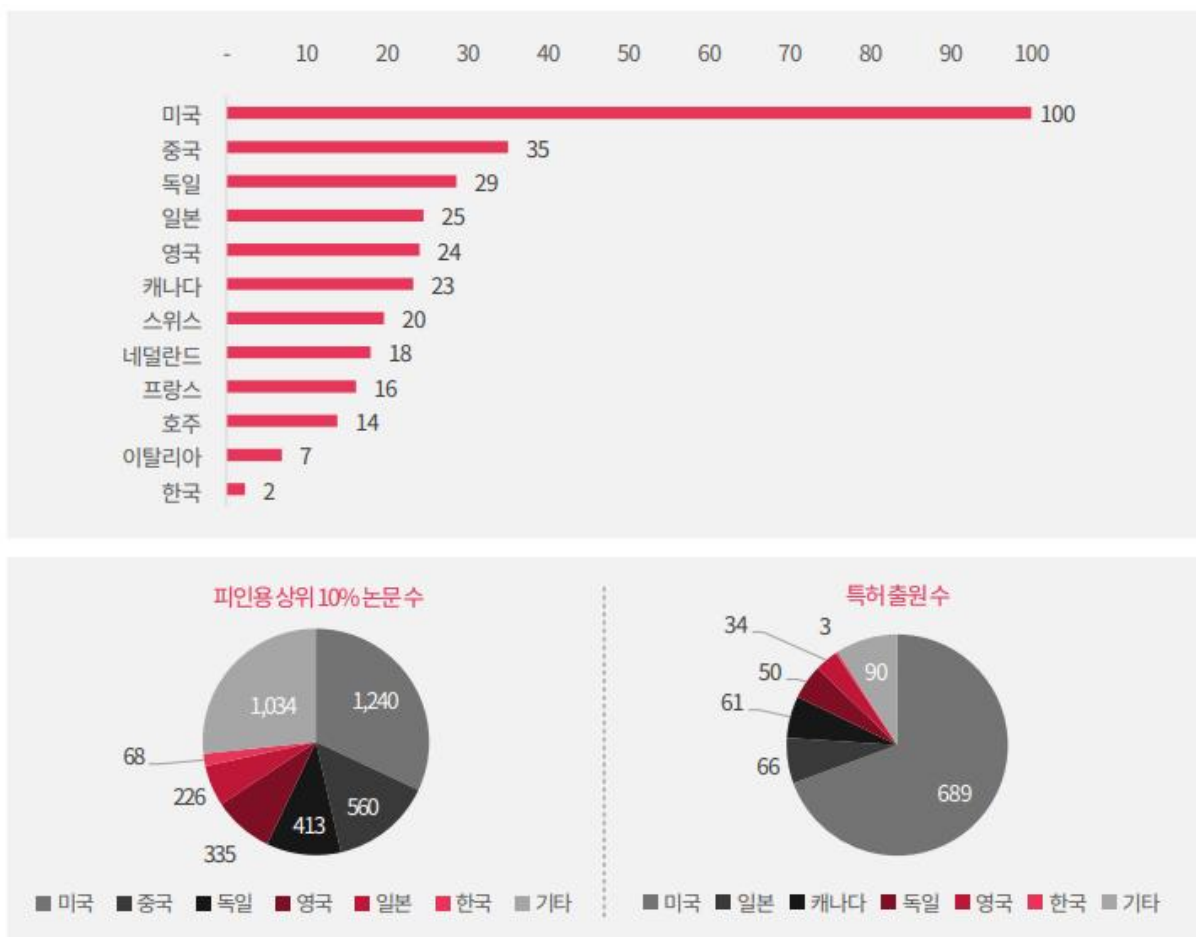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양자기술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2022년 양자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였음. 2025년에는 전년 대비 54% 증액된 1,980억원의 양자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고, 양자기술 주도권 확보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

10) 삼일PwC경영연구원, “큐비트의 마법, 상상을 계산하는 양자컴퓨터 혁명”, 2025. 3.

고자 민-관 합동 국가 양자과학기술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양자 추진전략(퀀텀 이니셔티브)」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략을 심의·의결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자컴퓨터 기술 수준을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2위인 중국은 35점, 3위인 독일은 29점인 반면 우리나라는 2점으로 조사대상 국가 1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 양자컴퓨터 기술 수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이에 개정안은 양자컴퓨터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하여 양자컴퓨터 기술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및 사업화 시설·연구개발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 현행대비 10%p 이상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양자컴퓨터 분야에 대한 민간 분야의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됨.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양자기술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¹¹⁾.

양자기술은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에 그 기술이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기술 개발 및 특허 선점이 중요한데, 현재 양자컴퓨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IBM과 Google 대비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는 저조한 수준임.

또한, 양자컴퓨팅 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다른 분야에 파급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²⁾.

둘째, 양자컴퓨터를 비롯한 양자기술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¹³⁾에 포함되어 있어 이미 국가적 관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미래양자융합포럼, ‘2024 양자정보기술백서’, 2024. 12.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재료연구원,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국가주도 미래소재 기술 로드맵: 양자, 2023. 5.

점에서 기술주권 확보가 필요한 분야로 인정된 분야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양자컴퓨터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양자컴퓨터 등 양자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원천기술로 규정하고 있어 이차전지, 백신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 대비 10%p 이상 낮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 및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양자컴퓨터는 이미 현행법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분야 대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둘째, 개정안과 같이 양자컴퓨터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자원 하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우선적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154

13)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 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3) 국가전략기술에 로봇 추가(구자근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로봇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있는 로봇 분야를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분야로서 국가전략기술로 재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로봇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로봇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국내 로봇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의 진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로봇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로봇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공지능, 로봇공학, 자율주행 및 Io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로봇기술은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 로봇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2019년 5조 3,350억원에서 2023년 5조 9,805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로봇 관련 기업 수는 2019년 2,235개에서 2023년 2,524개로 늘어났으나, 전체 기업의 64%가 연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이고, 글로벌 로봇산

업이 서비스용 로봇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¹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용 로봇 매출액이 전체 매출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로봇을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서비스용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도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

(단위 : 억 원, %)

구 분	매 출				생 산			
	2021년	2022년	2023년	'22년 대비 증감	2021년	2022년	2023년	'22년 대비 증감
제조업용 로봇	28,740	29,747	29,903	0.5	26,514	27,319	27,902	2.1
전문서비스용 로봇	5,091	5,417	6,143	13.4	4,478	5,081	5,655	11.3
개인서비스용 로봇	3,985	4,406	4,313	△2.1	3,679	4,144	4,090	△1.3
로봇부품 및 소프트웨어	18,266	19,363	19,446	0.4	16,938	18,721	19,264	2.9
총 계	56,083	58,933	59,805	1.5	51,609	55,265	56,912	3.0

구 분	수 출				수 입			
	2021년	2022년	2023년	'22년 대비 증감	2021년	2022년	2023년	'22년 대비 증감
제조업용 로봇	8,981	9,327	9,248	△0.9	4,223	4,582	4,668	1.9
전문서비스용 로봇	353	435	713	63.9	243	270	349	29.3
개인서비스용 로봇	643	688	643	△6.4	217	236	189	△20.1
로봇부품 및 소프트웨어	1,568	1,798	1,880	4.5	1,150	1,291	1,356	5.0
총 계	11,546	12,248	12,484	1.9	5,833	6,380	6,562	2.9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체 수	로봇 매출	사업체 수	로봇 매출	사업체 수	로봇 매출
1억 원 미만	435	20,581	471	20,687	503	23,168
1억 원~10억 원 미만	1,291	498,972	1,213	467,086	1,106	484,349
10억 원~50억 원 미만	626	1,299,006	641	1,373,352	725	1,654,875
50억 원~100억 원 미만	71	485,899	109	697,138	112	705,074
100억 원 이상	78	3,303,826	75	3,335,050	79	3,113,045
총 계	2,500	5,608,284	2,509	5,893,314	2,524	5,980,51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로봇산업협회, 2023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4. 12.

1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 로봇 산업현황 및 지향점'. 2023. 5.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로봇은 이미 현행법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일반적인 분야 대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둘째, 우리나라의 로봇산업은 판매시장 기준 세계 4위, 로봇밀도¹⁵⁾ 1위라는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제로봇연맹(IFR)의 ‘2024 세계 로봇공학 보고서(2024 World Robotics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로봇밀도는 2018년 이후 매년 평균 5%씩 증가하여 전세계 모든 국가 중 유일하게 네 자리 수의 로봇밀도를 기록하였고, 연간 로봇 설치 대수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로봇시장에 해당함.

셋째, 개정안과 같이 로봇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자원 하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종의 원리에 따라 우선적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154

15) 로봇 밀도는 직원 수 대비 가용 산업용 로봇 수를 의미함.

4) 국가전략기술에 원자력(허성무의원안) 또는 소형모듈원자로 (SMR) 추가(이언주의원안, 안철수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 또는 소형모듈원자로 (Small Modular Reactor, SMR)¹⁶⁾를 추가하려는 것임.

□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2024년 기준 총 전력생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발전비중인 30.7%에 비해 1.8%p 증가하였음.

현재 국내 원전은 총 26기가 운영 중이고, 준공 예정인 새울 3·4호기와 2024년 착공한 신한울 3·4호기까지 향후 투입될 경우 총 30기가 가동될 전망이다.

국내 원자력 산업의 총 매출액은 2023년도 32조 1,556억원으로 전년도 25조 4,234억원 대비 6조 7,322억원(26.5%) 증가하였으며, 이중 원자력발전사업자는 26조 2,659억원(81.7%), 원자력공급산업체는 4조 5,863억원(14.3%), 연구·공공기관은 1조 3,034억원(4.1%)을 차지하고 있음¹⁷⁾.

2023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투자액은 10조 718억원으로 2022년도 9조 2,968억원 대비 7,750억원이 늘어 8.3% 증가하였음.

16) SMR은 원자로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로 생산해 현장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기 출력 300MW 이하의 원자로를 의미함.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25. 4.

[원자력산업분야 투자액 규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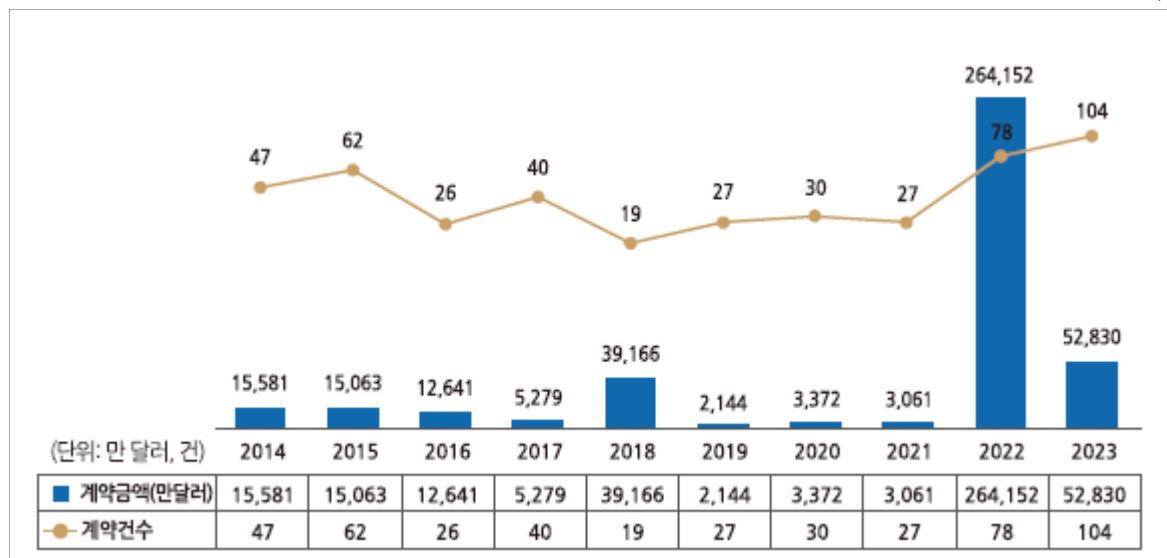
연도	2022	2023	증감액 (증감률)
원자력발전사업자	7조 8,216억원	8조 1,896억원	3,680억원 (4.7%)
원자력공급산업체	2,485억원	4,880억원	2,395억원 (96.4%)
연구·공공기관	1조 2,267억원	1조 3,942억원	1,675억원 (13.7%)
합계	9조 2,968억원	10조 718억원	7,750억원 (8.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25. 4.

2023년에는 13개국에 104건의 수출이 이루어졌고 수출액은 52,830만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2022년도 대비 수출건수는 26건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크게 감소한 수준임.

[원자력산업분야 해외수출 계약금액 및 건수 추이]

(단위: 만달러, 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25. 4.

글로벌 에너지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이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2030년에는 그 비중이 5.5%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1년 원자력 공급량은 732Mtoe인데, IEA는 2050년에는 공급량이 1,147MToe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임.¹⁸⁾

2023년 4월 기준,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 436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극동아시아 116기, 북미 112기, 서유럽 93기, 중앙·동유럽 74기, 중동 및 남아시아 32기, 남미 7기, 아프리카 2기가 운영 중임.

2000년 이후 글로벌 원전기수 및 용량은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8년 이후 독일·미국·영국 등에서의 원전 폐쇄로 인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음.

18) 한국에너지공단, 「2024 KEA 에너지편람」, 2024. 5.

[세계 원전 운영 현황]



자료 : IAEA PRIS(2023.04.19.),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참조

한편, 정부는 차세대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혁신형 SMR을 개발하여 2030년대 초도호기 상업운전 개시 및 글로벌 SMR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¹⁹⁾ 그리고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개발 및 실증 신속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을 위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 간 1조 6,49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원자력 또는 SMR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원자력 산업에 대한 R&D 및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19) 정부,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안)」, 2024. 5.

확대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각국에서 원자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action Act: IRA)’(2022년 8월) 등을 통해 가동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음. 특히, IRA 제정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가 투입되기로 결정되었는데, 가동 중 원전과 신규 및 차세대 원전 등에 대한 생산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음.

프랑스는 2021년 10월 에너지분야의 탈탄소화 달성을 위해 SMR 개발을 포함한 원자력 부문에 2030년까지 10억 유로 투자를 발표하였음. 일본은 2023년 2월 ‘선진 원자로 개발 공정 로드맵’ 발표를 통해 자국의 기술 성숙도에 맞춘 선진원자로 개발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음. 영국은 신생기업의 SMR 산업 진출지원을 위한 미래 원자력 활성화 기금(FNEF)으로 1.2억파운드를 배정하였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원자력 및 SMR은 이미 현행법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일반적인 분야 대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둘째, 개정안과 같이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자원 하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종의 원리에 따

라 우선적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154

5) 국가전략기술에 우주항공 추가(허성무의원안, 박대출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우주항공을 추가하려는 것임.
 - 글로벌 우주경쟁 시대의 개막으로 우주기술을 활용한 경제·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 시대(New Space)가 도래하였음.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의 기치 아래 2024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가전략기술특위를 개최하여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전략로드맵을 수립·의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대비 투자규모나 기술수준이 미흡한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우주항공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첫째, 우주항공 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미래산업에 대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우주항공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수출·접근 제한 등 고도의 통제를 받는 전략기술로서 공급망 및 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분야 대비 막대한 인프라와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및 기간이 필수적인 분야로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함께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미래 유망산업에 해당함.

특히 미래전장이 우주로 확장되면서 우주 관련 기술의 확보가 곧 다른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동향 탐지 및 군사작전 고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우주인터넷·통신 등 우주 기반 신산업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둘째,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기술 분야 후발국이라는 점에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우주에 투자하는 국가는 2000년 31개국에서 2023년 90개국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우주경제 규모는 2023년 6,300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8,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²⁰⁾. 또한, 글로벌 항공 시장은 기술 발전에 따른 드론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2023년 5,829억 달러에서 2031년 8,95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²¹⁾.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예산 규모는 약 7억 2,400만 달러로, 1위 미국(619억 6,700만 달러)이나 2위 중국(119억 3,500만 달러) 대비 저조한 수준이고, 상위 10개국과 비교하면 GDP 대비 우주 예산의 비중이 0.03%로 최하위 수준임²²⁾.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 세계경제포럼&맥킨지앤컴퍼니, 우주 글로벌 경제성장 1.8조 달러의 기회, 2024. 4.

21) KINGS RESEARCH, 2024. 4.

22)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 2024. 8.

첫째, 항공·우주 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있어 이미 R&D 및 투자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과 같이 우주항공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자원 하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우선적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154

6) 국가전략기술에 해상풍력 추가(이언주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재생에너지²³⁾에 해당하는 해상풍력을 추가하려는 것임.
-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평균 지표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장기목표를 규정하였음.

이후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하였고,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확충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다각적 정책을 펼치고 있음.

정부는 2025년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건강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적 태양광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음.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구체적으로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 추진과 더불어 제조, 설치, 운영 등 해상풍력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2038년까지 40.7GW의 풍력발전 설비용량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운영 중인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3GW(육상풍력 2.0GW, 해상풍력 0.3GW)로 2030년 전망 19.3GW 대비 약 12%에 불과한 상황임.

□ 개정안은 해상풍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해상풍력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가 확정하여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인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탄소중립산업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가 필요함.

개정안과 같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는 해상풍력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경우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해상풍력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주요국과의 기술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의 풍력 분야 기술수준은 유럽 대비 평균 76.7%에 불과하고 중국,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도 기술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풍력 분류체계별 기술수준 및 국산화율 조사 결과]

구 분	기술수준(기술기준 국산화율)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
	우리나라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블레이드	80.0	95.0	95.0	100.0	80.0	80.0
발전기	70.0	80.0	95.0	100.0	90.0	70.0
고정식 하부 구조물	80.0	85.0	90.0	100.0	85.0	80.0
부유식 구조물 (부유체, 계류선, 앵커)	70.0	70.0	87.5	100.0	80.0	70.0
시험 및 인증	78.0	80.0	90.0	100.0	70.0	78.0
운송/설치	80.0	86.5	90.0	99.0	80.0	80.8
계통	80.0	85.0	87.0	100.0	85.0	80.0
해상변전소(고정식)	70.0	90.0	90.0	95.0	85.0	73.7
운영/유지보수	65.0	80.0	90.0	100.0	75.0	65.0

주 1) 일부 조사기술 대상 만을 기입하였으며 모든 기술에 대한 최고기술보유국은 유럽임
 2) 고정식 하부 구조물과 부유식 구조물은 해상 하부 구조물에 해당함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2년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기술수준 및 국산화율 조사”, 2022. 9.

셋째, 2025년 3월에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²⁴⁾, 산업통상자

2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해상풍력 공급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성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 등 자금지원
3.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책 수립에 따른 사업을 하는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정책 수립에 따른 사업을 하는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은 이미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분야 대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	중견	중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둘째,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현재도 해상풍력 관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이 2025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임.

「해상풍력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²⁵⁾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자금 조달 원활화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32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전용 보증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지원대상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시설자금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액이고 총 보증지원 규모는 4,000억원에 달함.

문 의 처
02)6788-5154

25)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해상풍력발전설비, 부품 등의 표준화
5. 해상풍력기술의 정보교류
6. 그 밖에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해상풍력 공급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금융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성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 등 자금지원
3.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책 수립에 따른 사업을 하는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추가(강승규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철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첫째, 철강산업은 제조업 분야의 핵심적 요소로서 조선이나 건설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분야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중국산 철강의 덤핑과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기술패권 경쟁 상황 속에서 주요국들이 자국 철강산업에 대한 전략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국산 철강의 저가 덤핑은 국내 철강 시장의 가격질서를 훼손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미국 등 주요국은 공급 과잉과 저가 덤핑 등으로부터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미국은 2025년 3월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6월 초에 관세율을 50%로 인상하였고, EU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ariff Rate Quotas,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임.²⁶⁾

26) “산업부, EU(유럽연합) 철강 TRQ(관세할당) 도입에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과 같이 철강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자원 하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종의 원리에 따라 우선적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세계 철강 생산 6위, 소비 5위, 수출 3위로 세계 철강산업을 선도하는 주도국이고²⁷⁾ 철강산업은 이미 대규모로 성장한 전통산업이라는 점에서 철강 관련 기술을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신규 핵심기술과 동일하게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둘째, 철강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정정책 및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중소 철강사를 대상으로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개발, 실증지원 장비 등 산업 공유 자산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116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전기로 용해공정에서 저탄소 원료인 직접환원철 또는 수소환원철로 철강을 제조하는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

2025. 10.

27) 출처: 한국철강협회

화하는 시설”로 신규 지정하여 위 시설에 투자할 경우 일반적인
사업화시설 대비 상향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됨.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에 대응하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하여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21.62%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27.91%~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²⁸⁾ 국내 철강산업 보호
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54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0호 15호, 32호

8)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포함 명확화(황정아의원안)

□ 개정안은 2025년 2월 세법개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이하 “AI 데이터센터”)가 포함됨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 AI 데이터센터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위한 고성능 연산 자원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AI 특화형 인프라 시설로서, 기존 데이터센터와 달리 GPU(Graphic Processing Unit), TPU(Tensor Processing Unit) 등 AI 전용 반도체가 중심을 이루며 빠른 연산처리와 초저지연 네트워크 구조를 특징으로 함.²⁹⁾

「지능정보화 기본법³⁰⁾」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³¹⁾」은 AI 데이터센터를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정

29) 출처: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201080000&bid=0055&list_no=94220&act=view)

3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6. 1. 22. 시행 예정)」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의하고 있음.

-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McKinsey의 분석에 따르면 전세계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약 6조 7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³²⁾

미국 등 주요국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투자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미국은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를 통해 텍사스 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역시 2022년부터 추진한 동수서산(東數西算) 국가 전략에 따라 서부 지역에 초대형 데이터센터 허브를 구축하고 있으며³³⁾, 프랑스는 올해 2월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163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 우리나라 역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202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였고,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AI 분야 세부기술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화시설 등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된다면 관련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공제가 적용되고 사업화시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35%의 공제가 적용될 예정임.

32) McKinsey & Company, “What is a data center?”, 2025. 7.

(<https://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mckinsey-explainers/what-is-a-data-center>)

33) 2024년 6월 기준 약 435억 위안을 투입하여 195만대 이상의 서버랙 설치

또한, 2025년 4월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항만지원시설에 AI 데이터센터를 추가하여 항만구역에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추가적인 규제 완화 등을 검토 중임.³⁴⁾

한편, 국내 데이터센터는 2000년 52개소에서 2024년 165개소까지 증가하였고 최근 신설되는 데이터센터 중 AI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³⁵⁾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AI 기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I 기술의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등 컴퓨팅 자원 성능과 효율이 함께 향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열처리 등의 인프라가 필수적임.³⁶⁾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시장은 2018년 2.42조원에서 2024년 6.22조원까지 확대되었고, 2028년에는 10.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1.8조 규모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 계기,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2025. 4.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9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주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였음. 또한, SK그룹과 AWS가 총 7조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2025년 6월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였고, 울산광역시에 따르면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2027년 6월 완공 예정임.

36) SK에코플랜트, “엑셀 뚫는 AI 데이터센터 시장 얼마나 커질까?”, 2025. 3.

참고로 2024년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투입된 글로벌 투자금액은 3,180억 달러로 2023년 대비 34.7% 증가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둘째, 글로벌 빅테크 AI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에 대한 주도권 상실은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I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AI 기술 육성 및 국가 안보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I 기술의 발달로 미래에 AI가 국민 일상 전 영역에 침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AI 관련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법·규제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글로벌 빅테크의 AI 독과점이 지속되는 경우, 민감한 데이터의 국외 유출,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AI 기술우위의 적대국이 치명적 유해 알고리즘을 확산시켜 안보에 위협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음.

이처럼 AI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각 국가가 외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AI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 ‘소버린(Sovereign) AI’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AI 기술력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잠재적인 안보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상 세부적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도 세법 개정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 개정을 통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분야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문 의 처
02)6788-5154

9) 국가전략기술에 클라우드컴퓨팅 추가(김상훈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을 추가하려는 것임.
- 클라우드컴퓨팅은 HW/SW 등의 정보자원을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기술임.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을 위한 방대한 컴퓨팅 자원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를 개별기업이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클라우드를 통해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어 클라우드컴퓨팅이 4차 산업혁명의 기초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음.

최근 클라우드는 타 기술 및 산업과 융합하여 온·오프라인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클라우드화되는 XaaS(Everything as a Service)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

[클라우드서비스 모델별 분류]

구 분	서비스 모델	세부내용
1세대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2세대	PaaS (Platform as a Service)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및 실행 환경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SaaS (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서비스
3세대	XaaS (Everything as a Service)	AI, AR·VR, 블록체인, IoT 등 온·오프라인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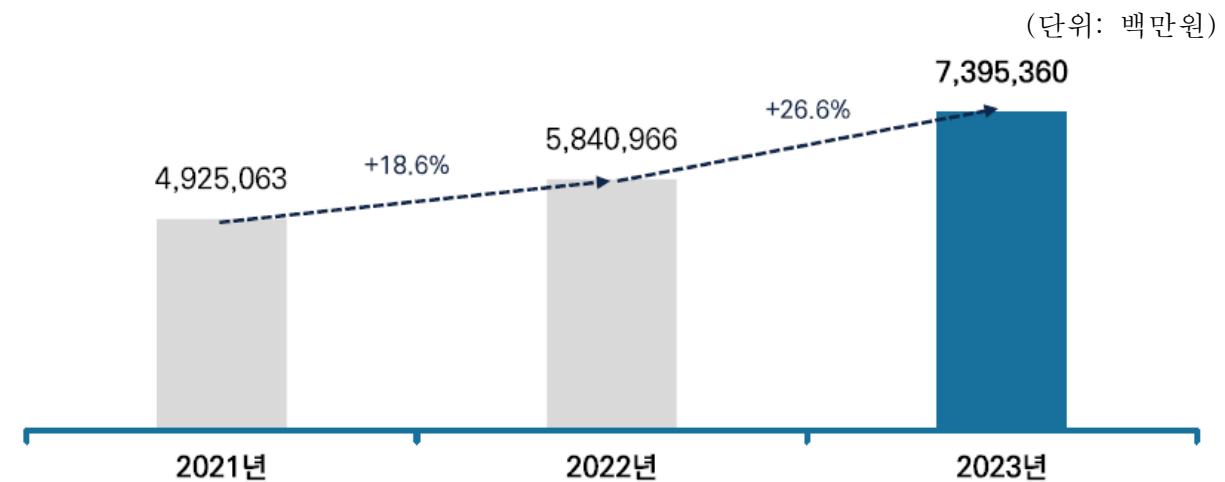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729.6조원인 반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3.83조원에 불과함³⁷⁾.

우리나라에서 2023년 클라우드 부문 매출액은 7조 3,954억원(2022년 대비 26.6% 증가)이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은 2,389개(2022년 대비 18.3% 증가)였음.

클라우드 공급기업은 대기업 40개, 중견기업 127개, 중소기업 2,222개로 구성되며, 매출액은 대기업 3.17조원·중견기업 9.41조원·중소기업 9.65조원임. 부문별 매출액은 IaaS 3조 1,689억원(42.8%), SaaS 2조 5,902억원(35.0%), CMS³⁸⁾ 1조 1,299억원(15.3%), PaaS 4,736억원(6.4%)임.³⁹⁾

[클라우드 부문 전체 매출액 추이]



자료: 「2024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5. 4.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 “AI 시대 클라우드 전략: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2024. 10.

38) CMS는 Content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뜻하는 용어임.

3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3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2. 지능정보	다. 클라우드	1)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실행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소프트웨어 자체의 변경 없이 수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기술 및 SaaS 응용을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쉬업(mashup) 기술
		2)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database), 웹(web), 모바일(mobile), 데이터(data) 처리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상에서 손쉽게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의 개발·배포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및 실행 환경 제공 기술
		3)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술: 가상머신(Virtual Machine) 혹은 컨테이너(container, 경량화된 가상화기술) 기반으로 자원을 가상화하고, 다중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자원을 확장하는 기술 및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의 중개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loud Service Brokerage) 기술

클라우드컴퓨팅은 양질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저장·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활용한 우수한 AI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 선점과 기술력 격차로 인해 국내 기업의 수출이 어려운 상황임. 클라우드 부문 총 수출액은 2022년 기준 744억원에서 2023년 기준 557억원으로 감소하였고, 전체 기업중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역시 2022년 5.7%에서 2023년 4.4%로 감소하였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 관련 사업 추진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지원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예산 지원(37.9%)’에 이어 ‘세제 혜택 지원(28.2%)’이 2위로 나타났는데,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 개발(R&D) 사업에 370억원,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육성(정보화) 사업에 44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망 SaaS 개발 육성 지원, 개발자 기술교육 등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과 같이 클라우드컴퓨팅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자원 하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우선적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154

10) 국가전략기술에 재생에너지 추가(박지혜의원안)

□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재생에너지⁴⁰⁾를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① 태양에너지, ②풍력, ③수력, ④해양에너지, ⑤지열에너지, ⑥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⑦폐기물에너지 등을 말함.
재생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탄소중립 달성을 이끄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평균 지표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장기목표를 규정하였음.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이후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하였고,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확충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다각적 정책을 펼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0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시행 2022. 3. 25.)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3년에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을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60,400GWh이며, 발전비율은 9.67%로 2018년 발전비율 9.03% 대비 0.64%p 증가하였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비율]

(단위: GWh,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발전량	594,609	589,200	579,999	611,015	626,448	624,883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53,688	52,341	43,124	50,657	57,780	60,400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9.03	8.88	7.44	8.29	9.22	9.67

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총발전량) × 100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추가함으로써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R&D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는 2025년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강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적 태양광 확산 등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확정하여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인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 발전시설 확충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발한 국가재정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고,⁴¹⁾ 사업성이 부족한 초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⁴²⁾

문 의 처
02)6788-5154

41)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4,263억원

42) 2025년도 확정예산 기준 340억 7,200만원

11) 국가전략기술에 지속가능항공유 추가(문진석의원안)

- 개정안은 지속가능항공유를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란 화석연료가 아닌 유기물, 비식용 식물, 도시 고형 폐기물, 농업 및 임업 잔류물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항공유를 말함.

[지속가능항공유(SAF) 제조과정]

기술명	원료	내용	2030년 가용 량	기술 성숙도
HEFA	폐유지, 식물성 오일, 팜유, 사용된 조리용 오일	유지 및 지방을 수소화 처리	195백 만톤/년	상용화
FT	농림부산물, 임업 잔류물, 생활 폐기물	가열을 통해 합성가스 생성 후 탄화수소로 전환	2,290백 만톤/년	파일럿
AtJ	농림부산물, 임업 잔류물, 생활 폐기물	발효를 통해 알코올 생성 후 탄화수소로 전환	1,330백 만톤/년	파일럿
PtL	CO ₂ , 물, 재생 가능 전기	전기와 CO ₂ 및 물을 결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연료로 전환	-	개발

주: 2030년에는 PtL 방식의 SAF가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양의 생산 설비가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공급량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가용량(시장에 실제로 공급 가능한 양)을 신뢰성 있게 산정할 수 없음

자료: IATA, Net Zero 2050: sustainable aviation fuels, 2023. 12.

이러한 지속가능항공유는 2008년 상업용 항공기에 처음 사용된 이후 2011년 공식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5월 기준으로 총 737,559회의 항공편에 사용되었고, 현재 전 세계 69개 공항에서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연간 생산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21년 1억 리터, 2022년

3억 리터, 2023년 6억 리터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약 18억 7,500만 리터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지속가능항공유는 여전히 전 세계 항공연료 수요의 0.53%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생산 능력 확대와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⁴³⁾

[지속가능항공유(SAF) 필요량]

(단위: 억원)

구분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연도	8	23	90	229	346	449

자료: IATA, Net Zero 2050: sustainable aviation fuels, 2023. 12.

□ 개정안은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항공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속가능항공유 1% 혼합사용 시 2023년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약 2천만톤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16만톤의 탄소배출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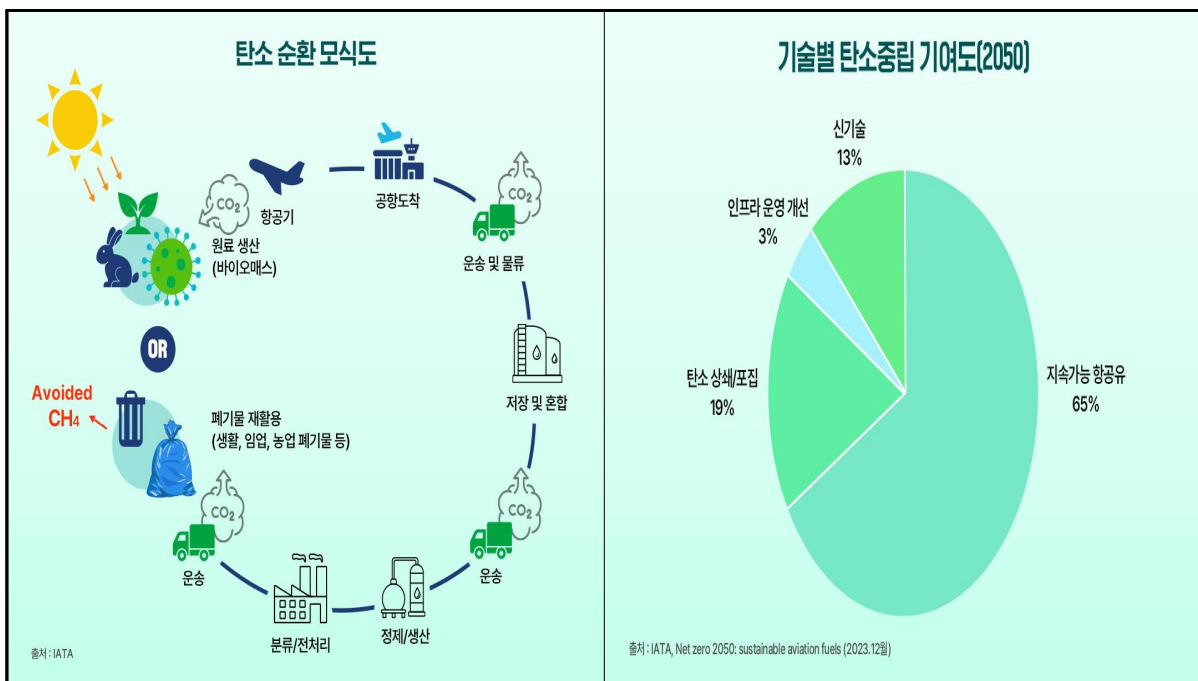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속가능항공유는 바이오매스가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거나 대기 중에서 직접 포집한

43) 국토부·산업부 합동 발표, 지속가능항공유(SAF) 로드맵, 2024. 8. 30.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생산되므로 기존 화석연료 대비 최대 80%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음.

또한, 항공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기술 중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도가 약 65%로 가장 높아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탄소 순환 모식도 및 기술별 탄소중립 기여도]



자료: IATA, Net Zero 2050: sustainable aviation fuels, 2023. 12.

둘째, 지속가능항공유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화제도 도입에 따른 공급주체 및 급유주체44)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23년 11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50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를 사용하여 2030년까지 국제항

44) 공급의무 대상: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급유의무 대상: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항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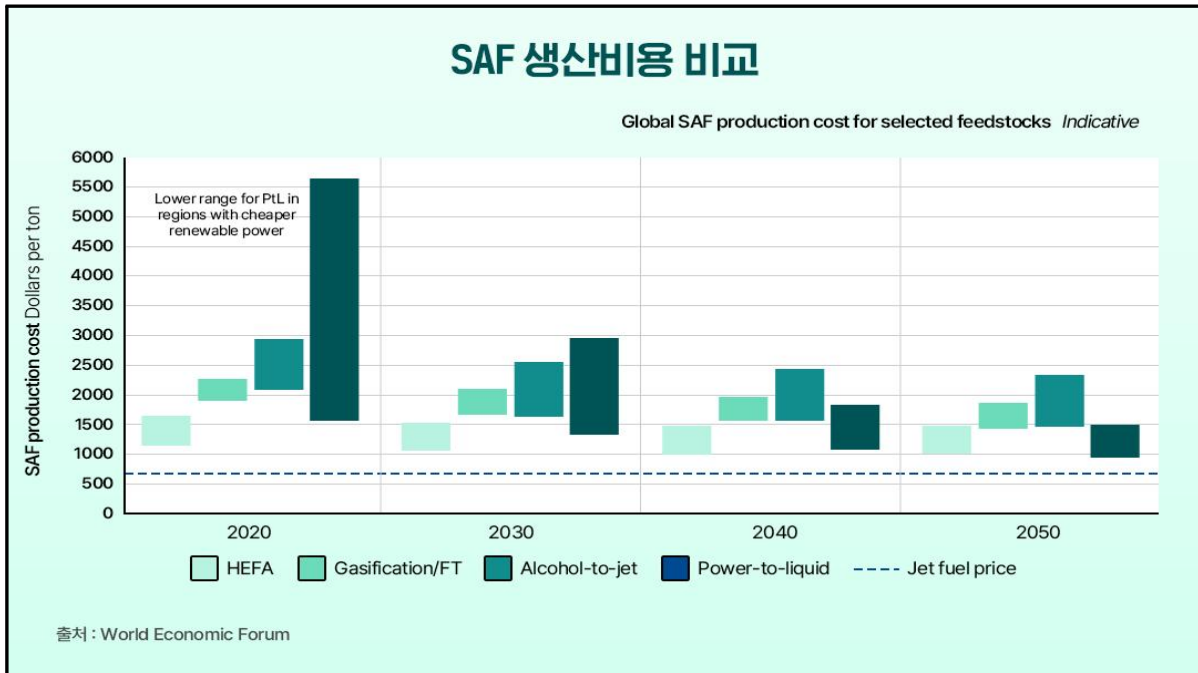
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EU와 영국은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화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국제항공 탈탄소화 및 지속가능항공유 초기시장 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하여 시행하고, 2030년에는 3~5%, '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 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2028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지속가능항공유가 혼합된 항공유로 급유하여야 함.

이처럼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비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따른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임.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비용 비교]



주: Jet fuel price(점선)는 기존 화석연료(석유) 기반의 항공유를 말함.

자료: IATA, Net Zero 2050: sustainable aviation fuels, 2023. 12.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항공유 개발 관련 주요 기술들은 현행 법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석유대체연료 개발 관련 기술]

구분	기술
국가전략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수소와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나 석유화학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젤, 항공유, 액화석유가스, 나프타를 생산하는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수소, 항공유 등을 생산하는 기술
	산업 부생가스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화학·생물학

구분	기술
	적 변환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화, 화학적·생물학적 변환을 통해 연료·화학물·건축소재 등을 재생산하는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및 [별표 7의2]

문 의 처
02)6788-5154

12) 조세특례 대상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규정(서범수의원안)

- 개정안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정의와 일치시키려는 것임.
- 2023년 3월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음.

동법은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지원기관 지정, 연구사업 지정 및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 조성, 핵심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전방위적 육성·지원 방안을 담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8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주항공·해양 등 12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⁴⁵⁾

4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대 국가전략기술]

- ① 반도체·디스플레이, ② 이차전지, ③ 첨단 모빌리티, ④ 차세대 원자력, ⑤ 첨단 바이오, ⑥ 우주항공·해양, ⑦ 수소, ⑧ 사이버보안, ⑨ 인공지능, ⑩ 차세대 통신, ⑪ 첨단로봇·제조, ⑫ 양자

* 음영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가전략기술과 유사한 분야임

□ 개정안은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과 연동시키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첫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부처별 기준이 상이해 민간투자 촉진이 필요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은 7개 분야(세부분야 71개)⁴⁶⁾,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은 12개 분야(세부분야 50개)이며, 기술명 또한 바이오의약품과 첨단 바이오 등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인 차세대 원자력, 사이버보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성장·원천기술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 안보 및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간투자 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세제지원의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46) 2025년 9월 말 기준(신규추가된 인공지능, 미래형 이동수단 미반영)

둘째, 일관된 국가정책 추진을 통한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 최소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해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용어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더라도,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소관 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이라는 분야가 도입된 이상 세제지원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 체계적 정합성 및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에 지정기준, 지원목적 등이 상이한 다른 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할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도입취지가 훼손되고, 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⁴⁷⁾

47)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수의 핵심기술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기술의 중요성, 지원 필요성 외에 조세지출의 규모나 조세특례의 효과성 등 종합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분야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고손실을 극소화하고 공평과세를 이룩하기 위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통합규제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조약 및 법률에 열거하고 있는 세법 등 일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게 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조세특례의 대상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통합규제 규정을 둔 취지가 무색해지고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음.⁴⁸⁾

둘째, 유사 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 등 세제혜택의 무분별한 확대 요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⁴⁹⁾

48) 「대한민국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4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

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⁵⁰⁾ 등 여타 유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 및 산업 분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함.

문 의 처

02)6788-5154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5. 해당 기술이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50) 반도체 분야 8개 기술, 디스플레이 분야 4개 기술, 이차전지 분야 3개 기술, 바이오 분야 2개 기술, 로봇 분야 1개 기술, 방산 분야 1개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13) 종합 검토의견

- 국가전략기술에 특정 기술분야를 추가하는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수의 핵심기술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는 국가전략기술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전략기술에 더 많은 기술 분야를 추가할수록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다변화할 수 있음.

- 다만,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한정된 재정자원 하에서 보다 다양한 기술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할수록, 기업의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분산되어 일부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소수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둘째,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확대될수록 상향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R&D 지출 및 시설투자 비율이 높아져 세수감소 규모가 커질 수 있음.

셋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기술분야가 확대될수록 더 많은 산

업에서 세제혜택의 확대 요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기술분야와 유사한 기술분야의 범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각 산업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넷째, 양자, 우주항공 등 국가 차원에서 육성·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경우 각 소관 부처에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및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2. 생산비용 세액공제 신설

가. 전략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 사업 국내생산 촉진 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 의 35)	☐ 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 의 35)	☐ 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 의 35)	☐ 국가전략기술 활용 생산 재화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 의 35)	☐ 국가전략기술 사업 국내생산 촉진 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 의 35)	☐ 국가전략기술 사업 국내생산 촉진 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 의 35)	☐ 국가전략기술 사업 국내생산 촉진 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 의 35)	☐ 국가전략기술 사업 국내생산 촉진 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 의 35)	☐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 의 35)	☐ 신성장 · 원천 기술 및 국 가전략 기술사 업 국내 생산 촉진 을 위 한 세액 공제 신설 (안 제100 조의 35)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공제대상: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 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 국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 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	공제대상: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 기술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첨단기 술을 활용 한 제품(이 하 “전략 산업제품”) 에 관한 생산업 을 영위하고 있는 내 국인이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최종 생산하여	공제대상: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 기술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첨단기 술을 활용 한 제품(이 하 “전략 산업제품”) 에 관한 생산업 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국내 에서 전 략산업 제품을 생	공제대상: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이하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 플레이, 청정수소, 미래형 이동·운 송수단, 바이오의 약품 등 대통령령 으로 정	공제대상: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 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 국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 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	공제대상: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 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 국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 플레이, 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공제대상: 내국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재생 에너지 설비, 이 차전지, 전기자 동차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재화 를 생산 하여 국 내에서 판매하 는 경우 그 생산 량 또는 생 산비용	공제대상: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 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 국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 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 형 운송	공제대상: 내국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전기 자동차 및 수소 전기자 동차 등 미래형 운송 및 이 동수단, 철강 관련 재화, 그 밖에 국내 생 산기 반 유 지 가 국가 경 제 안 보 및 공 급 안 정 화 에 필 수 적 이 라	공제대상: 신성장· 원천기술 과 국가 전략기술 을 활용 하여 제품을 생 산 하 는 사 업 을 영 위 하 고 있 는 내 국 인 이 공 제 요 건 을 가 추 어 탄 소 중 립, 항 공·우 주, 첨 단 소 재 ·부 품· 장 비, 방 위 사 업, 발 전 시 스 템, 원 자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생산비용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전락산업제품 판매가격	산 하 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제품 판매가격의 1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	하는 재화(이하 “국가전략기술재화”)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출고가격의 최 대 10% 이내에서 해당 재화를 생산 하 여 지출한 비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국가전	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해당 생산비용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소형모듈원자로, 양자컴퓨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판매 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 하 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	고 인정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판매수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액	력 등 신성장·원천기술사업 및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공제요건: 판 매 된 전략산업 제품이 국내에서 최초 사 용 되 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경 우에 배 제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략 기 술 재 화 생 산 비 ”) 에 재 화 별 공 제 율 을 공 하 여 계 산 한 금액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경우 생 산비용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① 해당 재 화 가 국 가 전 략 기 술 사 업 을 영 위 하 는 내국 인에 의 하여 제 조될 것 ② 해당 재 화 의 최종 제 조 공 정 이 국내 소재 제 조 시 설 에서 이 루 어 질 것		① 해당 제 품 이 내 국 인 에 의 하 여 제 조 될 것 ② 해당 제 품 의 최종 제 조 공 정 이 국내 소재 제 조 시 설 에서 이 루 어 질 것	① 해당 재 화 가 국 가 전 략 기 술 사 업 을 영 위 하 는 내국 인에 의 하여 제 조될 것 ② 해당 재 화 의 최종 제 조 공 정 이 국내 소재 제 조 시 설 에서 이 루 어 질 것	① 내국 인에 의 하여 제 조될 것 ② 해당 제 품 이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바에 따 라 국내 에서 생 산될 것	① 해당 재 화 가 국 가 전 략 기 술 사 업 을 영 위 하 는 내국 인에 의 하여 생 산될 것 ② 해당 재 화 의 최종 생 산 공 정 이 국내 에 소재 한 생산 시 설 에 서 이 루 어 질 것	① 해당 재 화 가 국 가 전 략 기 술 을 활 용 한 사 업 을 영 위 하 는 내 국 인 에 의 하 여 제 조 될 것 ② 해당 재 화 의 최종 제 조 공 정 이 국내 에 소재 한 제 조 시 설 에 서 이 루 어 질 것	① 해당 재 화 가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바에 따 라 국내 에서 생 산될 것	① 해당 재 화 가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바에 따 라 국내 에서 생 산될 것	① 해당 재 화 가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바에 따 라 국내 에서 생 산될 것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③ 해당 재 화 가 국 내 에 서 최초 로 사용 될 것		③ 해당 제 품 이 국 내 에 서 최초 로 사용 될 것	③ 해당 재 화 가 국 내 에 서 최초 로 사용 될 것 ④ 재료 비 중 내 국 인 에 의하 여 국내 에서 제 조된 소 재 · 부 품·원재 료의 비 용이 차 지 하 는 비 중 이 업 종 별 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③ 해당 재 화 가 그 생 산 일 이 속 하 는 사 업 연 도 의 개 시 일 로 부 터 소 급 하 여 5 년 이 내 의 기 간 중 에 종 료 하 는 과 세 연 도 에 제 10 조 제 1 항 제 2 호 의		③ 해당 제 품 이 국 내 에 서 최초 로 사용 될 것	② 해당 재 화 가 국 내 에 서 최초 로 사용 될 것	② 해당 재 화 의 생 산 에 사 용 된 부 품 · 소 재 · 장 비 중 내 국 인 이 국내 에서 생 산 한 부 품 · 소 재 · 장 비 의 비 중 이 대 통 령 령 으 로 정	③ 해당 재 화 가 그 생 산 일 이 속 하 는 사 업 연 도 의 개 시 일 로 부 터 소 급 하 여 5 년 이 내 의 기 간 중 에 종 료 하 는 과 세 연 도 에 제 10 조 제 1 항 제 2 호 의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공 제 율: 15 % (김 태 년 의 원 안, 신영 대 의 원 안) , 20 % (정 일 영 의 원 안)	○공 제 율: 10%	○공 제 율: 판 매 가 격 의 10% 이하	는 비 율 이 상 일 것 ○공 제 율: 10%	국가전략 기술사업 에 따른 세액공제 를 신청 한 내국 인에 의 하여 제 조될 것 (위탁 포 함) ○공 제 율: 10%	○공 제 율: 15%(대기 업) 20%(중견 기업) 25%(중소 기업) * 단, 중소 기업 또는 중 견 기 업 이 최초로 중 소 기 업 또는 중견	○공 제 율: 대 통 령 령 으로 정 하는 목 별 면 율	○공 제 율: 생 산 비 용 의 30% 이하 범 위 에 서 대 통 령 령 으로 정 하는 목 별 면 율	하는 기 준을 초 과할 것 ○공 제 율: 대 통 령 령 으로 정 하는 금 액	국가전략 기술사업 에 따른 세액공제 를 신청 한 내국 인에 의 하여 제 조될 것 (위탁 포 함) ○공 제 율: 10 % (수 도 권 밖 의 지 역 에서 생 산 하 는 경 우 20%)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결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공제한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 협력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한도: 해당과세연 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20%	○공제한도: 해당과세연 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	○공제한도: 해당과세연 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30%	○공제한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 협력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경 우 3년간 기존 공제 율 적용 ○공제한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 협력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한도: 해당과세연 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40%	○공제한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 협력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한도: 내국인의 해당과세연 도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 에 따른 투	○공제한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 에 따른 투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법 인 세 , 가 산 세 및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추 징 세 액 은 제 외 하 고,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세 액 공 제 등 을 하 지 아 니 한 법 인 세) 의 10% (김 태 년 의 원 안), 20 % (정 일 영 의 원 안, 신 영 대 의 원 안) * 단, 해				법 인 세 , 가 산 세 및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추 징 세 액 은 제 외 하 고,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세 액 공 제 등 을 하 지 아 니 한 법 인 세) 의 10%	법 인 세 , 가 산 세 및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추 징 세 액 은 제 외 하 고,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세 액 공 제 등 을 하 지 아 니 한 법 인 세) 의 25%		법 인 세 , 가 산 세 및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추 징 세 액 은 제 외 하 고,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세 액 공 제 등 을 하 지 아 니 한 법 인 세) 의 30%	자 · 상 생 협 력 촉 진 을 위 한 과 세 특 례 를 적 용 하 여 계 산 한 법 인 세 , 가 산 세 및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추 징 세 액 은 제 외 하 며,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세 액 공 제 등 을 하 지 아 니 한 법 인 세) 의 20%	자 · 상 생 협 력 촉 진 을 위 한 과 세 특 례 를 적 용 하 여 계 산 한 법 인 세 , 가 산 세 및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추 징 세 액 은 제 외 하 며,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세 액 공 제 등 을 하 지 아 니 한 법 인 세) 의 10%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당 과세연 도 법인세 가 공제총 액을 넘지 못할 경우 대 통 령 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한도 설정(정일 영 의원안, 신 영 대 의 원안) ○적용기한: 2035. 12. 31.	○적용기한: 2035. 12. 31. 까지 국 내에서 판 매 하는 경우 최 초 판매 연 도부 터 10년 이 내까지	○적용기한: 2035. 12. 31. 까지 국 내에서 판 매 하는 경우 최 초 판매 연 도부 터 10년 이 내까지	○적용기한: 2030. 12. 31.	○적용기한: 2028. 12. 31.	○적용기한: 2035. 12. 31.	○적용기한: 2035. 12. 31.	○적용기한: 2035. 12. 31.	○적용기한: 2035. 12. 31.	○적용기한: 2030. 12. 31.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 해 당 사업연도 이 전 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 받은 자 산에 대 하여 감 가상각비 를 손금 으로 계 상한 경 우 해당 감가상각 비 상당 투자세액 공제액은 전체 공 제금액에 서 차감	○ 해 당 사업연도 이 전 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 받은 자 산에 대 하여 감 가상각비 를 손금 으로 계 상한 경 우 해당 감가상각 비 상당 투자세액 공제액은 전체 공 제금액에 서 차감	○ 해 당 사업연도 이 전 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 받은 자 산에 대 하여 감 가상각비 를 손금 으로 계 상한 경 우 해당 감가상각 비 상당 투자세액 공제액은 전체 공 제금액에 서 차감		○ 해 당 사업연도 이 전 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 받은 자 산에 대 하여 감 가상각비 를 손금 으로 계 상한 경 우 해당 감가상각 비 상당 투자세액 공제액은 전체 공 제금액에 서 차감				○ 해 당 사업연도 이 전 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 받은 자 산이 재 화 생산 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해 당 자산 에 대하 여 공제 받은 통 합투자세 액 공제 합계액을 5년간 균 등분 할 하 여 산정 금액을 공제	○ 해 당 사업연도 이 전 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 받은 자 산에 대 하여 감 가상각비 를 손금 으로 계 상한 경 우 해당 감가상각 비 상당 금액에 대한 세 액공제액 은 전체 공제액에 서 차감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20년간 이월공제 허용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최저한 세 적용 ○ 사후추징: 5년 이내 정 당 한 사유 없 이 국내 생 산 을 중 단 하 거 나 생산 시설 중 대 통 령 령	액 에 서 차 감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김태년의원안)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이후 국가전략 기술재화를 생산·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으로 정하는 비율을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공제액 추정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시행일: 2026. 1. 1.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과 세 연 도 에 투 자 하 는 분 부 터 적 용 (정 일 영 의 원 안)									

* 김태년의원안 2025. 3. 7. 발의(의안번호 8735), 정일영의원안 2025. 3. 13. 발의(의안번호 8885), 진성준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67), 안도걸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38), 신영대의원안 2025. 4. 17. 발의(의안번호 9937), 정태호의원안 2025. 6. 12. 발의(의안번호 10777), 김은혜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02), 김상훈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18), 박지혜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33), 박성민의원안 2025. 9. 24. 발의(의안번호 13224), 최은석의원안 2025. 10. 21. 발의(의안번호 13656), 윤영석의원안 2025. 10. 27. 발의(의안번호 13727)

현 행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 및 제3자 양도 특례 규정 ○ 대상: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①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② 법인세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할 경우	☐ 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 규정 ○ 대상: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생산한 전략산업제품(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한정)에 대하여 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에 대한 환급 특례 규정 ○ 대상: 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은 내국인 중 국가전략기술재화를 생산하는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소재하고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과세연도에 연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및 제3자 양도 특례 규정 ○ 대상: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①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②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현 행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내용: -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또는 제3자 양도(정일영의원안) - 미공제금액에 기업유형 및 투자시점별 비율을 곱한 금액 환급 또는 제3자 양도(신영대의원안) ① 중소·중견기업: 50% (~'26), 70%('27~'28), 100%('29~'30) ② 초기투자기업: 50% (~'26), 이후 100% ③ 그 외: 30%(~'26), 50%('27~'28), 70%('29~'30)) ○ 적용기한: 2028. 12. 31. 또는	○ 내용: 미공제금액의 50% 환급 ○ 적용기한: 없음	○ 내용: 미공제금액의 50% 환급 ○ 적용기한: 없음	○ 내용: -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또는 제3자 양도 ○ 적용기한: 2035. 12. 31.

현 행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상훈의원안
	2035. 12. 31.(정일영의원안) 2035. 12. 31.(신영대의원안) ○ 세액공제 이월공제 미 적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분부터 적용(정일영의원안) -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신영대의원안)	○ 세액공제 이월공제 미 적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진성준의원안) - 이 법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안도걸의원안)	○ 세액공제 이월공제 미 적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세액공제 이월공제 미 적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 정일영의원안 2025. 3. 13. 발의(의안번호 8885), 진성준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67), 안도걸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38), 신영대의원안 2025. 4. 17.(의안번호 9937), 정태호의원안 2025. 6. 12. 발의(의안번호 10777), 김상훈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18)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반도체 등의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생산비용에 대하여(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전략산업제품”)에 관한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전략산업제품을 최종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판매가격(진성준의원안) 또는 생산비용(안도걸의원안)에 대하여 일정 비율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안은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품목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려는 것이고, 박성민의원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생산비용에 품목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안은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철강 관련 재화, 그 밖에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국가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판매 수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한편, 세액공제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시설

을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사후추징 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안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신성장·원천기술사업 및 국가전략기술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대하여 10%(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 20%)의 공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및 김상훈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진성준의원안과 안도걸의원안은 3년 연속 결손금⁵¹⁾이 발생한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생산한 전략산업제품 중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한정하여 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환급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정태호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재화 생산비용 공제를 받은 내국인 중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또는 접경지역⁵²⁾에 소재하고 2년 연속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인을 대상으

51)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결손금이란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고(「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법인세법」 제14조제2항).

5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로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개정안별 비교]

구 분	김 태 년 의 원 안	정 일 영 의 원 안	신 영 대 의 원 안	진 성 준 의 원 안	안 도 결 의 원 안	정 태 호 의 원 안	박 지 혜 의 원 안	박 성 민 의 원 안	김 은 혜 의 원 안	김 상 훈 의 원 안	최 은 석 의 원 안	윤 영 석 의 원 안
공제 대상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 약품,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 등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한 재화	재생에너 지 설비, 이차전지 , 전기자동 차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 약품, 인공지능, 소형모듈원 자로, 양자컴퓨 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화	전기자동 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철강 관련 재화, 그 밖에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국가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 라고 인정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화	탄소중립, 항공·우 주, 첨단소재 · 부품 · 장비, 방위산업, 발전시스 템, 원자력 등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 및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이 동 수단, 바이오의 약품 등 국가전략 기술사업

구 분	김 태 년 의 원 안	정 일 영 의 원 안	신 영 대 의 원 안	진 성 준 의 원 안	안 도 걸 의 원 안	정 태 호 의 원 안	박 지 혜 의 원 안	박 성 민 의 원 안	김 은 혜 의 원 안	김 상 훈 의 원 안	최 은 석 의 원 안	윤 영 석 의 원 안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제품
판매처	국내 판매분 한정								무관		국내 판매분 한정	무관
공제 수준	생산비 용의 15%	생산비 용의 20%	생산비 용의 15%	판매가 격의 10%	판매가 격의 1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	출고가격 의 1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	생산비 용의 3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	생산비 용의 10%	생산비용 의 15%(중견 20%, 중소 25%)	판매수량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생산비용 의 10% (수도권 밖은 20%)
공제 요건	①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 ② 국내 소재 제조시설에서 최종 제조공정 진행 ③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 ④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정 비율 이상일 것(정태호의원안)							① 국내 생산 ② 해당 재 화 가 국내에서 최 초 로 사용	① 국내 생산 ② 5년 이 내 에 국가전략 기 술 R&D 세 액공제를	① 내국인 에 의하여 제조 ② 국내 소재 제조 시 설 에 서 최종 제조 공정 진행	① 국 내 생산 ② 생산에 사용된 부 품 · 소재 · 장비 중 내 국 인 이 국내 생산	① 국내 생 산 ② 5년 이 내에 국가 전 략 기 술 R&D 세액 공제를 신 청한 내국

구 분	김 태 년 의 원 안	정 일 영 의 원 안	신 영 대 의 원 안	진 성 준 의 원 안	안 도 결 의 원 안	정 태 호 의 원 안	박 지 혜 의 원 안	박 성 민 의 원 안	김 은 혜 의 원 안	김 상 훈 의 원 안	최 은 석 의 원 안	윤 영 석 의 원 안
									신 청 한 내국인이 제조		비중이 대 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할 것	인이 제조
공제 한도 (소득세)	-			해당 과세연 도 소득세 의 20%	해당 과세연 도 소득세 의 10%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의 30%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의 40%	-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의 20%	-
공제 한도 (법인세)	각 사업연 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단, 별도 한도 설정 가능)		해당 과세연 도 법인세 의 20%	해당 과세연 도 법인세 의 10%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30%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40%	각 사업연 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30%	각 사업연 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10%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5%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
적용 기한	2035. 12. 31.			2035. 12. 31. 까지 판매 시 최초 판매연도부터 10년 이내		2030. 12. 31.	2035. 12. 31.		2028. 12. 31.	2035. 12. 31.		2030. 12. 31.
기타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 투자세액공제액은 공제금액에서 차감					-		최저한세 적용	-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받은 자산이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받은 자산에

구 분	김 태 년 의 원 안	정 일 영 의 원 안	신 영 대 의 원 안	진 성 준 의 원 안	안 도 결 의 원 안	정 태 호 의 원 안	박 지 혜 의 원 안	박 성 민 의 원 안	김 은 혜 의 원 안	김 상 훈 의 원 안	최 은 석 의 원 안	윤 영 석 의 원 안
											재 화 생 산에 직 접 사 용되 는 경 우 해 당 자 산에 대 하 여 공 제 받 은 통 합 투 자 세 액 공 제 합 계 액 을 5 년 간 균 등 분 할 하 여 산 정 한 금 액 을 공 제 액 에 서 차 감	대 하 여 해 당 사 업 연 도 중 에 감 가 상 각 비 를 손 금 으 로 계 상 한 경 우 해 당 감 가 상 각 비 에 상 당 하 는 금 액 에 대 한 세 액 공 제 액 은 공 제 금 액 에 서 차 감
사 후 추 징	-										5년 이내 국내 생산 중단 또는 국외 이전 시 공제액 추징	-
미공제 금액	환급 불가	미공제금액 발생 시 환급		① 3년 연속 결손금 발생		① 2년 연속 결	환급불가			미공제금 액 발생	환급불가	

구 분	김 태 년 의 원 안	정 일 영 의 원 안	신 영 대 의 원 안	진 성 준 의 원 안	안 도 결 의 원 안	정 태 호 의 원 안	박 지 혜 의 원 안	박 성 민 의 원 안	김 은 혜 의 원 안	김 상 훈 의 원 안	최 은 석 의 원 안	윤 영 석 의 원 안
환급요건				②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에서 생산 한 전략산업제품 중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한 정		손금 발 생 ② 수도 권과밀억 제 권 역 외 또는 접경지역 에서 생 산한 제 품에 한 정				시 환급		
환급률	-	100%	30%~100 %	50%			-			100%	-	
미공제 금액 제3자 양도특례	양도 불가	양도 가능		양도 불가			양도 불가			양도 가능	양도 불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첫째,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각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을 2022년 8월에 제정하였음.

IRA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이하 “AMPC”) 관련 규정이 있는데, AMPC란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음⁵³⁾.

AMPC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한 재화에 대한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임.⁵⁴⁾

5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4. 10. 25.

54) 다만, 2025년 7월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안 통과에 따라 당초 2032년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세액공제가 2025년 9월말 조기종료되었고,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세액공제 역시 2027년말 조기폐지가 예정되어 미래형 이동수단 생산 및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유인은 일부 감소한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에 대하여 연구개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단계와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단계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품의 직접적인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음.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 투자, 생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세제지원 제도가 구축되어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셋째, 국가전략기술 등 생산세액공제와 더불어 환급 및 제3자 양도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손실 발생 또는 최저한세 등으로 세제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됨.

손실이 발생하거나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은 세액공제의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여 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이후 실제 이윤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첨단기술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단계에 납부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미공제금액에 대한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세액공제의 ‘양도’와 관련한 입법례는 없으나 ‘환급’과 유사한 구조의 근로장려금 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⁵⁵⁾, 자녀장려금 제도(CTC: Child Tax Credit)⁵⁶⁾가 시행되고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분야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5)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층을 직접적으로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정책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금액 등에 따라 차등화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서 미국에서 최초로 고안되어 197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56)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2014년부터 시행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	중견	중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공 제			추가 공 제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둘째, 세액공제의 대상 및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각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최종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소요되는 생산비용의 일정 비율 또는 판매가격이나 판매량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인데, 기획재정부는 공제대상 제품 및 생산비용의 범위 설정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원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⁵⁷⁾.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신고 기준 국가전략기술 분야 통합투자세액 공제 수혜법인은 29개이고 R&D 세액공제 수혜법인은 51개이지만, 국세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수는 추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임.⁵⁸⁾

또한, 공제대상이 최종재에 한정되는지,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한 중간재까지 생산비용 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한편, 다수의 개정안은 공제요건으로 해당 재화 또는 제품이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사용여부에 대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공제요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57)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했다는 이유로 해당 자동차 생산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58)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정확한 기업 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표본조사 등에 기반하여 추정한 결과 이차전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404개,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는 818개 정도임.

셋째, 김태년의원안 등 9건의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이 반면,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및 윤영석의원안은 판매 국가와 무관하게 공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국내 판매 요건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동 제도가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국내 판매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조세지출 규모 등을 감안한다면 국내 판매량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기획재정부는 국내 판매 요건과 무관하게 생산비용 공제는 수입품에 대한 차별조치이므로 통상규범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연구용역을 통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넷째, 세액공제 환급특례 신설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정일영의원안은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특례 적용기한을 비일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⁵⁹⁾ 동일한 특례를 중복적으로 규정⁶⁰⁾하고 있으므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신영대의원안은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특례 적용기한을 2035년 말까지

59) 정일영의원안 제144조의2제2항에 따르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미공제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 반면, 안 제144조의4에 따르면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동일한 환급 특례 적용이 가능함.

60) 안 제144조의2제2항, 제144조의4제1항 및 제2항

설정하고 있는 반면 환급세액 계산을 위한 비율에 대해서 2030년 말까지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섯째, 박성민의원안을 제외한 11건의 개정안은 신설하고자 하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정일영의원안 등 6건의 개정안은 미공제금액의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있음.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해 세액공제의 환급 및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최저한세 제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⁶¹⁾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주더라도 세부담 형평성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여섯째,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할 경우 서민, 농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동일한 요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61)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도권 외에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상황으로, 올해 말 연구용역 종료 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여부, 공제대상 등을 설정할 계획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지원방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 및 부처간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54

1. (미국) IRA 중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개요

* AMPC: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 **첨단 제조기술을 활용한 적격 부품**(eligible component)을 미국에서 생산 시* 세액공제 부여

* 관련이 없는 주체(unrelated person)에 판매되어야 함

○ **(적격부품)** 친환경 에너지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등

< '적격 부품' 정의 >

- 태양광·풍력 에너지 부품
- 인버터 (중앙 인버터, 상용 인버터, 풍력 인버터, 마이크로 인버터 등)
- 적격 배터리 부품 (전극활물질,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등)
- 적용 가능한 핵심 광물

○ **(세액공제)** 부품·핵심 광물별 상이

구 분	주요내용
배터리	(셀)35\$/kWh, (모듈)10\$/kWh
핵심광물	생산비용(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등)의 10%
태양광	(모듈)7¢/W, (셀)4¢/W, (웨이퍼)12\$/m ² , (폴리실리콘)3\$/kg (넥시트)40¢/m ²
풍력	(블레이드)2¢/W, (나셀)5¢/W, (타워)3¢/W

※ OBBBA를 통해 적용기간 축소

* (배터리·태양광) '32년 유지, (핵심광물) 영구→'33년 단축, (풍력) '32→'27년 단축

2. (일본) 전략물자 국내생산 촉진세제 개요

- ☐ (취지) 디지털 전환, 친환경 등을 위해 수익성이 낮아도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지원 적용
- ☐ (대상)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적 중요성이 큰 물자의 일본 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24년 신설, '25.4월 시행)
- ☐ (규모) 제품 생산량에 비례하여 지급(공제규모는 제품별 상이), 감면 전 법인세(산출세액)의 **40% 한도**(반도체의 경우 20% 적용)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5개 분야)		■ 전기차, 반도체, 그린스틸*, 그린케미컬**, 재생항공연료(SAF***)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철강 제품 / ** 식물·폐기물로 제조한 화학제품 *** Sustainable Aviation Fuel : 식용유·생활 폐기물 등을 활용하여 만든 항공연료
세제 혜택	적용 범위	【 ①투자 비용 또는 ②생산·판매액 기준 중 더 적은 금액 】 ① 전략분야 생산설비 투자액(중전 미사용 자산으로 한정)의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액 ② 일본 내 전략물자 생산량(판매 전제)에 비례 ①(전기차) 40만엔/대, ②(반도체) 0.4~2.9만엔/개, ③(그린스틸) 2만엔/톤, ④(그린케미컬) 5만엔/톤, ⑤(SAF) 30엔/리터 ※ 다만, 7년차 75%, 8년차 50%, 9년차 25% 수준으로 공제액 경감
	공제 한도	■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0년간 법인세액의 반도체 분야 최대 20%, 나머지 4개 분야 최대 40% 한도로 세액공제 * '26.3.31까지 경산성에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필요
	이월 공제	■ (조건) 40% 공제한도 초과 등에 따른 미적용분 발생시 이월공제 ■ (한도) 반도체 최대 3년, 기타 4개 분야 최대 4년

- ☐ (추가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적용

- ① 전년대비 계속고용자 급여 등 지급총액 증가율 $\geq$ 1%**
- ② 국내 설비투자액 > 당기 감가상각총액의 40%**
- ③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과세표준) $\leq$ 직전 사업연도 소득금액**
 ※ 기업 과세표준(이익분) 증가시 공제 미적용